

구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11. .

제출자 : 구 미 시 장

1. 제 정 이 유

-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용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
-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

2. 주 요 내 용

-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·세출 구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-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특별회계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금함(안 제5조)
-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제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3. 참 고 사 항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

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본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4. 차입금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3조(세출) 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
2.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3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
4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5.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6.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
7.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제4조(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 등) 본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 다만,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5조(전용금지) 본 특별회계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예비비) 본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